

#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7. 01. 02  
개정: 2017. 12. 22  
개정: 2018. 04. 23  
개정: 2018. 06. 29  
개정: 2020. 06. 22  
개정: 2020. 07. 27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평의원회는 가야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제31조 및 학교법인 대구학원 정관 제3장 제3절에 근거하여 평의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2., 개정 2020.6.22.)

**제3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 자문사항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2.)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장 조 직

**제4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6.29., 2020.06.22., 2020.7.27.)

1. 교수 : 3명
2. 직원 : 3명
3. 조교 : 1명
4. 학생 : 2명
5. 동문, 퇴임교직원, 지역인사 등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2명

② 교수 및 직원 평의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하며, 조교 평의원은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개정 2020.7.27.)

④ 동문 평의원은 본교 재직 교직원이 아닌 동문 중 대학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하며, 퇴임교직원, 지역인사 등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평의원은 대학 운영에 대

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20.7.27.)

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8.4.23)

⑥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4의 지역인사는 학교법인 대구학원(이하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있는 자 또는 법인 관련 인사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4.23.)

**제5조(위촉)** 대학평의원회의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한 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17.12.22., 개정 2020.06.22.)

① 교수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 중에서 교수협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②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협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③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에서 학생자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27.)

④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본교 재직 교직원이 아닌 동문 중에서 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퇴임교직원, 지역인사 등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27.)

⑤ 조교는 주무부서(교무처)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원)**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7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7.12.22., 2020.6.22.)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신설 2017.12.22.)

###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평의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회의록 및 공개)**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④ 회의일자 및 안건은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문자와 이메일(E-mail) 등을 통하여 평의원에게 개별 통지한다.(개정 2018.4.23., 2020.6.22.)

⑤ 회의록은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제10조의 2(출석 및 자료제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2.)

**제11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간사)**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개방이사 및 감사

**제14조(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의장은 학교법인 대구학원 정관 제20조의 2에 의하여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2.22., 2020.07.27.)

**제15조(개방이사 후보자)** ① 개방이사 후보자는 평의원회 의원이 추천한다.

②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를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개방이사 후보자는 학교법인 대구학원 정관 제21조의 4항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서 사립학교법 제22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17조(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위원은 평의원회에서 2인을 선출한다.(개정 2018.4.23.)

**제18조(감사 추천)** 감사의 추천절차는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 법인 전문대학 대학평의회와 협의하여 단수로 추천한다.

### 제5장 보 칙

**제19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9의 2(내규)**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2.)

**제2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대구학원 정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12.22., 개정 2020.6.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 제4조(구성 및 자격) ①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